www.cmsedi.or.kr

쉽고 편리한 자동이체서비스

CMS 이용안내

금융결제원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 KFTC"

Ⅰ. CMS 개요

1. CMS 란?
2. 금융결제원 CMS 특징
3. CMS 서비스 종류
4. CMS 서비스 이용 대상
5. CMS 참가금융기관
6. CMS 이용계좌
7. CMS 신청 및 이용절차

04

Ⅱ. CMS 신청

1. CMS 신청 절차
2. CMS 이용 신청서 작성 요령
3. CMS 신청시 이용기관 결정사항

10

Ⅲ. CMS 이용

1. CMS 출금이체
2. CMS 입금이체
3. CMS 이용기관 승인정보 변경
4. CMS 이용승인 해지

18

Ⅳ. 기타서비스

1.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서비스
2. CMS 현금영수증
3. 빌링원플러스

24

Ⅴ. 이용요금

1. 수수료 종류
2. 수수료 체계

26

Cash Management Service

I CMS 개요

1. CMS란?
2. 금융결제원 CMS 특징
3. CMS 서비스 종류
4. CMS 서비스 이용 대상
5. CMS 참가금융기관
6. CMS 이용계좌
7. CMS 신청 및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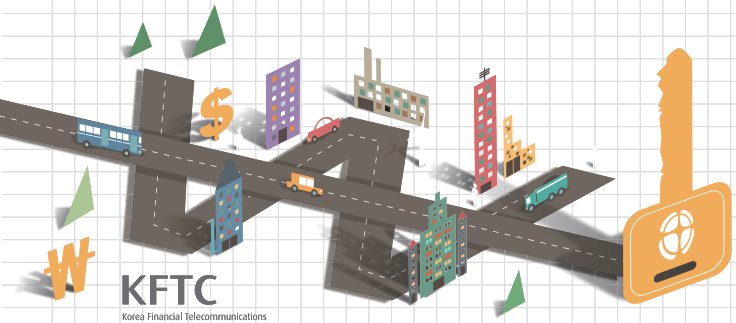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❶ CMS(Cash Management Service) 란 ?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기관의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거나 고객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❷ 금융결제원 CMS 특징

• 이용기관(사업자)은

- 금융기관 공동의 지급결제기관인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와 거래하는 고객의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마다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각종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손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 고객계좌에서 정해진 날짜에 자금을 출금하므로 체계적인 자금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 고객계좌에서 미출금시 여러 번 재출금 요청이 가능하므로 연체관리가 수월해지며, 수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고객계좌 출금일(D) 바로 다음 영업일(D+1)에 이용기관 지정계좌로 자금이 입금됩니다.

  (단, 2014. 6. 26 이후 신규 신청기관은 신규승인월 익월부터 3개월동안 D+3일, 그 후 3개월동안은 D+2일, 그 후에는 D+1일에 자금이 입금됩니다.)

※ 신규신청기관의 자금입금일 변경 예시

▶ 신규신청기관의 자금입금일 변경 예시

1월 (승인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D + 3일			D + 2일			D + 1일	

• 이용기관의 고객은

- 국내 전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증권사)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선택에 제약없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정해진 날짜에 이용기관이 자동 출금하므로 각종 대금의 납부방법 및 납기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③ 서비스 종류

• 출금이체 익일출금/당일출금(수납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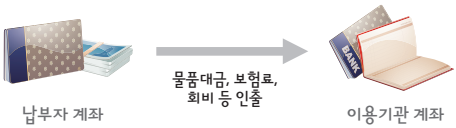

물품대금, 보험료, 회비 등 이용기관(사업자)이 수납해야 할 각종 자금을 다수의 고객(납부자)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기관이 출금을 요청하여 출금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 출금이체(익일출금) 서비스 : 출금일 전일 출금요청, 출금일 익일 결과확인(3일처리)
▣ 출금이체(당일출금) 서비스 : 출금일 당일 출금요청, 출금일 당일 결과확인(당일처리)

▶ 익일출금 및 당일출금은 병행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출금 당일 고객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깜빡 잊고 출금 전일 요청자료를 보내지 못한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 당일 서비스를 활용)

• 입금이체 서비스 (지급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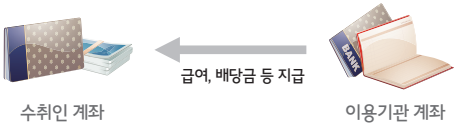

급여, 배당금, 적립금, 환불대금 등 이용기관(사업자)이 지급해야 할 각종 자금을 이용기관의 지정계좌에서 출금하여 다수의 고객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④ CMS 이용대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고유번호증을 득한)임의단체, 학교, 유치원 등 각종 자금 수납·지급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 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CM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MS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CMS 참가금융기관

• 은행권(국내 전 은행 참가)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코드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코드
산업은행	002	새마을금고중앙회	045
기업은행	003	신협	048
국민은행	00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50
수협은행 및 수협중앙회	007	HSBC은행	054
농협은행	011	도이치은행	055
농협중앙회(회원조합)	012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057
우리은행	020	BOA은행	060
SC제일은행	023	비엔피파리바은행	061
한국씨티은행	027	산림조합중앙회	064
대구은행	031	우체국	071
부산은행	032	KEB하나은행	081
광주은행	034	신한은행	088
제주은행	035	케이뱅크	089
전북은행	037	카카오뱅크	090
경남은행	039	토스뱅크	092

• 금융투자회사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코드	금융기관명	금융기관 코드
유안타증권	209	대신증권	267
KB증권	218	한화투자증권	269
미래에셋대우	238	하나금융투자	270
삼성증권	240	신한금융투자	278
한국투자증권	243	DB금융투자	279
NH투자증권	247	유진투자증권	280
교보증권	261	메리츠종합금융증권	287
하이투자증권	262	부국증권	290
현대차증권	263	신영증권	291
키움증권	264	케이프투자증권	292
이베스트투자증권	265	한국포스증권	294
SK증권	266		

⑥ CMS 이용계좌

출금이체의 수납계좌 및 입금이체의 지급계좌는 결제원이 부여하는 이용기관 관리코드 당 각 1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의 추가가 필요한 기관은 추가로 CMS 이용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법인계좌는 이용기관, 이용기관의 고객 모두 CMS 이용계좌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개인계좌는 CMS 이용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❼ CMS 신청 및 이용절차

CMS 신청

① 주거래 금융기관과 CMS 이용계약 체결 및 CMS 이용신청서 제출
②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보증수단 제출 → CMS 가승인
③ 전산 테스트 → CMS 승인(실시)

▼

CMS 이용

<출금이체>
① 고객으로부터 출금동의(서면, ARS 및 녹취 등) 받기
② 출금동의내역 전송 및 고객의 출금계좌등록
③ 출금요청 → 자금수납

<입금이체>
① 입금요청 → 자금지급

▼

CMS 해지

① CMS 해지신청서 제출
② CMS 해지

⊙ 타 CMS사업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 분	금융결제원CMS	타 CMS
사업방식	전 금융기관 공동추진사업	각 금융기관과 개별 계약에 따른 사업
금융기관 인프라	국내 전 은행 및 증권사 이용가능	일부 금융기관만 이용가능
거래 주체 및 자금 정산방식	이용기관이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며 출금자금을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직접 입금 - 결제원은 이용기관과 금융기관간 데이터 중계역할 수행 - 이용기관 앞 입금 안될 위험이 없음	출금자금을 각 금융기관으로 부터 CMS 사업자가 직접 입금 받고 일정기간 후 이용기관으로 입금 - 이용기관은 금융기관과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님 - CMS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이용기관 앞 입금 안될 위험 존재
처리 시간 (출금요청~결과확인)	3일, 당일 - 이용기관 상황에 맞게 선택가능	3일 이상
자금 정산주기	출금일 +1일 오전 입금 (다만, 신규신청기관의 자금정산은 일정기간 이후 출금일 +1일 적용)	출금일 +2일 이후 입금

MEMO

Cash
Management
Service

II CMS 신청

1. CMS 신청 절차
2. CMS 이용 신청서 작성 요령
3. CMS 신청시 이용기관 결정사항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1 CMS 신청 절차

① 주거래 금융기관과 CMS 이용계약 체결 및 CMS 이용신청서 작성

② CMS 이용신청서와 아래의 첨부서류를 금융결제원 앞 (우편)제출

구 분		첨부서류
공통서류		- CMS 이용계약서(금융기관과 체결) 사본 1부 - 수납(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원본 1부
추가 서류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학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법인소속지사	- 지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본사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정부기관	- 정부기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정부기관 발신명의 협조공문 등)
	유치원,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	- 설립인가증 또는 설립허가증 등 (제출 시 실사면제)
	전년도 매출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기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제출 시 실사면제)

③ 현장실사 진행 및 보증수단 제출(현장실사 완료 시)

④ 가승인 안내받은 후 테스트 통보서 FAX 제출 및 전산 테스트 실시

※ 이용기관이 사용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전산테스트 생략 가능

⑤ 실시통보서 원본제출 및 CMS 이용승인

❷ CMS 이용 신청서 작성 요령

CMS 이용 신규신청서

금융결제원 귀중

(우) 135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CMS업무팀 ☎ 1577-5500 (단축:3), FAX : 02-566-6426

1. 신청기관 정보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상 호	금융결제원 CMS	대표자	홍길동	사업자(고유)등록번호	123-45-67890
사업장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①				

2. 신청정보 (□ 출금이체 □ 입금이체) ②

출금이체 (수납/수입업무)	수 납 모 계 좌	금융기관명	③	계좌번호	
	통장 기재내용 ④	금융결제원 CMS (상호 포함 8자 이내)		자금종류	⑤ 관리비 (예 : 회원금, 관리비 등)
□ 익일 출금 □ 당일 출금	출 금 한 도	월간출금한도 ⑥	(최소 50백만원 이상) 원	건당출금한도	(월간출금한도 10%이내) 원
	보 증 수 단	□ 보증보험 □ 질권 □ 금융기관 자금보증서 □ 결제원담보금 □ 협력사 책임제 □ 당연직접납부 □ 신용등급면제 □ 보증수단 없음(금융기관접수만 이용) ⑦			

※ "익일출금"과 "당일출금" 중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반드시 ✔ 표시, 둘 다 선택 가능

입금이체 (지급/지출업무)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③	자금종류	⑤

3. 전산처리정보

전 산 처 리 방 법	✔ PC ⑧	□ Host(○ TCP/IP, ○ X.25)	
고객관리 프로그램	□ 자체개발	□ 프로그램 업체(업체명 기재) ⑨	✔ 빌링원플러스(舊 CMS ASP)

※ 프로그램 협력업체 목록은 CMS 홈페이지(www.cmsedi.or.kr) → CMS → 프로그램 협력사에서 확인 가능

4. 결제원 중계수수료 납부계좌

금 융 기 관 명	⑩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2의 신청정보와 다른 계좌를 사용할 경우 통장사본 첨부
※ 수수료 부과기준은 CMS 홈페이지(www.cmsedi.or.kr) → CMS → 이용요금에서 확인 가능

5. 신청기관 담당자 정보

성 명	⑪ 김담당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번 호	010-1234-5678	팩 스 번 호	
이 메 일	cms@kftc.or.kr		

※ CMS 신청업무관련 모든 안내사항(SMS, e-Mail)은 상기 담당자 앞으로 발송되오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평가기관
○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 CMS 직접접수기관 보증금액 산정을 위한 신용평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성명, 개인사업자 대표자 생년월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직접접수기관 승인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까지 ⑫

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보증금액의 조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본인은 "CMS 이용약관"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CMS 신규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MS 이용약관 공지 : www.cmsedi.or.kr → 자료실 → 업무자료)

년 월 일

상호(대표자) : _____ 인감날인 또는 서명

* 개인사업자는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한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가능

첨부서류 (각1부) ※ 접수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원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통장사본 4. 금융거래 CMS 이용계약서 사본 5. 기타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설립허가증(복지시설, 유치원 등)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수입)실적 1억원 이상 증명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제출기관은 행장심사 면제 가능

▶접수일		▶접수번호		▶이용기관코드	9 9						

①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 기재

② 이용하고자 하는 CMS 서비스 선택

③ CMS 수납(지급)계좌로 이용할 계좌정보 기재

④ 납부자계좌에서 자금 출금시 고객통장에 기재될 문구를 기재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를 기재
- 한글 8자이내, 영문/숫자 14자 이내에서 기재

⑤ 출금(입금)하는 자금의 용도를 기재

⑥ 월간출금한도는 월간 의뢰/출금가능 상한금액이며, 건당출금한도는 건당 의뢰/출금가능 상한금액으로 월간출금한도의 10% 이내로 정함

⑦ 이용기관이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직접받아 원장에 등록하는 경우 제출할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선택 금융기관에서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받는 경우 **보증수단 없음**을 선택

⑧ 결제원과 파일을 송수신할 방식을 선택

⑨ CMS 파일 생성 및 관리할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프로그램 업체 선택 시 업체명을 기재

⑩ 결제원 중계수수료를 납부하는 계좌정보이며 출금(입금)이체계좌와 동일한 경우 작성 생략

⑪ CMS 신청담당자의 정보 기재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은 필수 기재)

⑫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표시

⑬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 날인

❸ CMS 신청시 이용기관 결정사항

1) 월간 출금 상한금액인 월간출금한도와 1건의 출금 상한금액인 건당 출금한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⑥번 관련)

- 월간출금한도는 한 달간 출금 요청하여 출금할 수 있는 총 금액의 상한을, 건당출금한도는 같은 날짜에 출금 요청하는 여러 건의 자료 중 1건당 의뢰할 수 있는 상한금액을 의미하며 건당출금한도는 월간출금한도의 10%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 월간출금한도는 최소 5백만원 이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월간출금한도가 클수록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p.14 참고)도 커지므로 이용기관의 한 달 매출, 평균수납금액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2) 고객의 출금동의를 어디에서 접수할 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⑦번 관련)

- CMS 출금이체는 서면(공인전자서명의 전자문서 포함),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반드시 납부자의 출금동의를 받아야만 이용가능하며
- 고객(납부자)은 거래 금융기관 또는 이용기관에 출금동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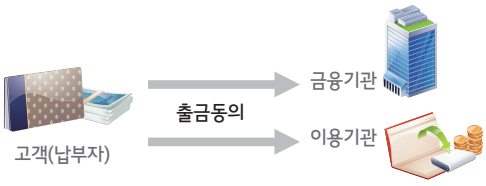

• **금융기관접수 (기본)**

납부자가 거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CMS 출금동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 **이용기관 직접접수 (선택)**

납부자가 이용기관에게 CMS 출금동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 이용기관 직접접수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은 금융기관 접수방식도 이용가능

3) 이용기관 직접접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접수 보증수단 중 1개를 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금동의 없는 부당인출에 대한 위험관리, 고객 민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직접접수 보증수단 중 하나를 택하여 결제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직접접수 보증수단 종류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 금융기관 예금 등에 결제원을 근질권자로 한 근질권설정계약서
- 결제원에 현금을 입금하는 결제원담보
- 결제원 프로그램 협력업체가 보증하는 협력사책임

※ 질권 및 결제원담보는 보증수단 해지시 3개월 후 환급됨

•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

직접접수 보증수단 가입금액은 월간출금한도의 일정비율(이용기관 신용도에 따라 상이, 면제~100%)로 정하며,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최저 가입금액은 오백만원입니다.

※ 단, 신규신청기관은 1년동안 월간출금한도의 100% 보증수단 가입

• 직접접수 보증수단 면제 대상 (보증수단 제출 없이 이용기관 직접접수 이용 가능)

① CMS 참가금융기관
② 제2금융권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④ 정부(재)투자기관
⑤ 학교법인
⑥ 상장회사
⑦ 외부감사 대상기관
⑧ 세무사, 회계사
⑨ 유치원, 어린이집
⑩ 지역아동센터
⑪ 신용등급 우수기관

※ 상장회사, 외부감사 대상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및 세무·회계사는 부적합 판단 시 보증수단 제출

※ 신용등급 우수기관은 신용도 하락 시 보증수단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발급대상** : 직접접수 보증수단을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CMS이용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결제원에 접수 후 보증보험 가입 안내를 받은 후 발급 진행

• **발급절차**

구 분	절 차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법인사업자 : 기업용 * 개인사업자 : 개인용 (대표자명의) 인증서 필요	보증보험사 앞 첨부서류 FAX 제출 → 보증보험 대리점에서 전산처리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보험료 결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를 작성, 첨부서류 구비하여 서울보증보험 방문 또는 서울보증보험 계약체결용 인감증명을 계약자가 직접 발급하고 해당 도장을 청약서에 날인한 후 인감증명과 함께 우편 제출

▶ 첨부서류 : CMS 보증수단 안내(이메일) 프린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추가)

▶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 : CMS 홈페이지 - 자료실 - 업무양식에 게시

▶ 보증보험 문의 : 서울보증보험 본 · 지점(www.sgic.co.kr)

• **보험료** :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연 0.224%(변동가능)

예)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연간 22,4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증권발급

• **제출방법** : 전자증권으로 발급되며, 발급 즉시 금융결제원에 자동 접수

※ 피보험자 : 금융결제원(사업자번호 : 220-82-01439)로 설정

4) CMS 출금(입금)요청 파일을 결제원과 송수신할 방식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⑧번 관련)

• **PC 방식**

인터넷에 접속하여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송수신 건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송수신 전용 S/W인 CMSPro 제공)

• **HOST 방식**

이용기관과 금융결제원을 전용선으로 연결하여 파일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송수신 건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합니다.(출금건수 10,000건 이상 권장)

5) CMS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⑨번 관련)

- CMS 출금(입금)이체는 전산처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서, 고객정보를 등록하고 출금(입금)요청 파일을 생성하여 결제원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계좌정보, 출금(입금)요청액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전산파일을 전송하면 이에 의거 금융기관이 출금(입금)하고 다시 전산파일로 처리결과를 통보

• 이용기관 직접개발

CMS파일레이아웃대로 파일이 생성되는 프로그램을 이용기관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

• 상용 프로그램 구입(임대)

CMS파일레이아웃대로 파일이 생성되는 상용프로그램을 프로그램업체로부터 구입(임대)하여 사용

※ 결제원에서도 프로그램(빌링원플러스)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초·중·고)는 협력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참고 금융결제원 CMS 협력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엔콤소프트(주)	1566-3560
(주)밴프로	1544-0283
(주)더존비즈온	02-6233-0612
(주)KCMS	1577-3690
씨엠에스코리아	1544-5616
주식회사 케이소프트	1644-8550
(주)지에스아이코	1577-1543
CMS메카	1544-4842
(주)신안소프트	1566-5767
(주)아인티피에스	1544-6303
T&B SOFT	1600-2570
사회보장정보원	02-6360-6550
TAX CMS	1544-3849
㈜휴먼소프트웨어	02-583-0425
셀파시스템	051-639-0100
드림씨엠에스	070-4801-4487
㈜휴먼정보시스템	062-603-4321
NS소프트	051-803-3974

업체명	전화번호
고려CMS	02-457-9108
웹케시(주)	02-3779-9120
나눔아이씨티(ICT)	02-749-3466
주식회사 엔지오웨어	02-565-5886
㈜스마트레이저	070-4010-7601
㈜이프뱅크코리아	02-2694-4054
대은소프트	1566-5788
금호데이타	070-8105-7558
포스텍 코리아	02-838-5117
㈜네오디시젼스	02-762-1162
㈜비즈빌드	02-831-0466
㈜에스앤비컬쳐	02-2215-5373
엔컴주식회사	051-932-0001
㈜크레비스파트너스	02-569-2249
㈜ 핑거	070-8224-8735
앤컴커뮤니케이션	02-336-0970
주식회사 코코아	070-4348-2035
큐솔루션(주)	032-252-1169

Cash
Management
Service

III CMS 이용

1. CMS 출금이체
2. CMS 입금이체
3. CMS 이용기관 승인정보 변경
4. CMS 이용승인 해지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❶ CMS 출금이체

1) 출금이체 처리절차

① 고객계좌등록 (출금이체신청)

• 고객계좌등록 처리흐름

- 금융기관에서 출금동의를 접수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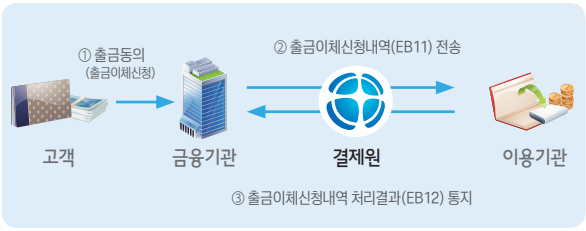

- 출금동의를 이용기관에서 접수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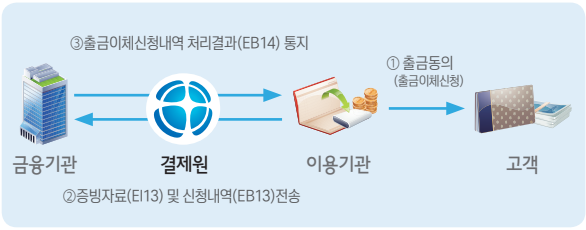

※ 금융기관 전산에 사전 등록된 고객계좌에 대해서만 출금요청 가능

• 고객계좌등록 파일 송수신 시각

구 분	파일명	파일흐름	이용기관 송수신시각
금융기관 접수시	출금이체신청(EB11)	결제원 ⇒ 이용기관	D+1 (11:00부터 수신)
	출금이체신청결과(EB12)	이용기관 ⇒ 결제원	D+2 (15:00까지 송신)
이용기관 접수시	출금동의증빙자료(EI13)	이용기관 ⇒ 결제원	D+1 (12:00까지 송신)
	출금이체신청(EB13)	이용기관 ⇒ 결제원	D+1 (12:00까지 송신)
	출금이체신청결과(EB14)	결제원 ⇒ 이용기관	D+2 (14:00부터 수신)

*D : 출금이체동의서 접수일

② 고객계좌에서 CMS 출금 (출금이체 처리)

• 출금이체 처리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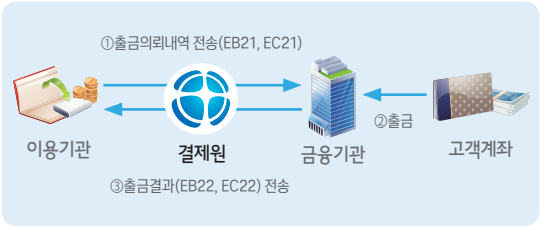

• 출금이체 파일 송수신 시각

- 출금이체(익일출금)

파일명	파일흐름	이용기관 송수신시각
출금이체의뢰(EB21)	이용기관 → 결제원	D-1 (17:00까지 송신)
출금이체결과(EB22)	결제원 → 이용기관	D+1 (03:00부터 수신)

- 출금이체(당일출금)

파일명	파일흐름	이용기관 송수신시각
출금이체의뢰(EC21)	이용기관 → 결제원	D (12:00까지 송신)
출금이체결과(EC22)	결제원 → 이용기관	D (23:00부터 수신)

*D : 고객계좌 출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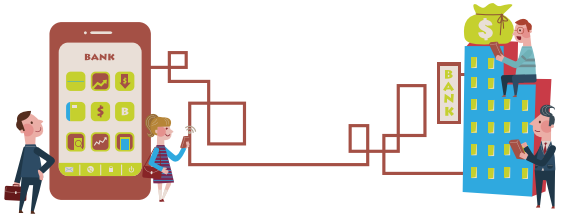

2) 출금이체 이용기관 준수사항

CMS 서비스 이용기관 준수사항

○ 출금이체 동의

- 출금이체 동의는 고객(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등을 직접 확인 후『**전자금융감독규정』제6조에 의거** 서면(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출금이체 동의 신청자와 출금계좌 예금주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출금이체 동의 접수 시 출금이체(동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며, 자체 양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출금이체(동의)신청서 양식의 각 항목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 출금이체 동의를 해지한 고객을 재등록 하려는 경우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단, 은행에서 해지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는 은행 접수만 허용(이용기관 재신청 불허)

- 출금이체 동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용기관이 인수·합병되는 경우 인수기관은 고객에게 인수·합병 사실 및 출금이체 동의 승계를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출금이체 동의 접수 시 고객으로부터 출금이체 동의 관련 개인정보를 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고객이 출금이체 동의에 관한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고객 앞 사전 고지

-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출금금액과 일자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출금이체 동의 사항에 변동이있을 경우 해당 고객에게 반드시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출금동의 해지 처리

- 고객이 출금이체 동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기관은 미수채권(위약금 포함)의 존재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지처리해야 합니다.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없이 출금한 경우에는『CMS 이용약관』제13조에 의거 이용승인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착오인출이 최근 1년간 3회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금이체신청 등록이 3개월간 중지됩니다.

○ 기타(파일 송수신)

- 출금이체신청 및 출금(입금)이체 의뢰파일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출금이체신청파일(EB11)을 일정시간 내에(고객의 출금이체 신청일+2일, 15:00까지) 수신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고객의 거래금융기관에 등록불능 통지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수신하셔야 합니다.

○ 상기외 사항은 CMS 홈페이지(www.cmsedi.or.kr) 자료실의『CMS이용약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금이체 부당인출 민원처리

• 부당인출이란?

-고객의 출금동의 없이 출금한 경우
-고객의 출금동의 해지의사를 밝혔으나 즉시 처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해지한 내역을 미수신하여 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금한 경우도 부당인출에 해당
-고객의 출금동의 해지 후에 임의로 재등록하여 출금한 경우
-출금동의서상의 약정금액 이상을 고지 없이 출금한 경우

• 납부자의 부당인출 민원접수 방법

CMS홈페이지(www.cmsedi.or.kr) → CMS 민원신청 →「CMS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02-1577-5500(3번), CMS 업무팀 ☎ 02-531-3333, FAX : 02-566-6426)

• 부당인출에 대한 민원해결 절차

- 결제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기관은 14일 이내에 배상조치 등이 포함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① 고객으로부터 이용약관에서 정한 CMS 출금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② 이용기관과의 연락두절로 등으로 인하여 CMS 출금동의의 징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결제원은 해당 이용기관의 CMS 이용을 중지한 뒤 해지 처리합니다.

② CMS 입금이체

수취인 계좌로 CMS 입금 (입금이체)

• 입금이체 처리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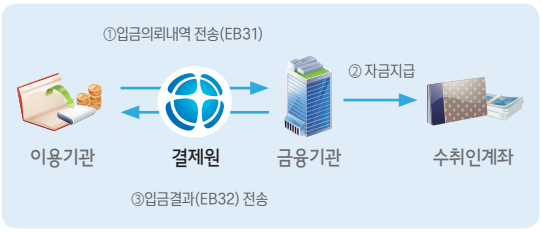

• 입금이체 파일 송수신

파일명	파일흐름	이용기관 송수신시각
입금이체의뢰(EB31)	이용기관 → 결제원	D-1 (14:00까지 이용기관송신)
입금이체결과(EB32)	결제원 → 이용기관	D (16:00부터 이용기관수신)

*D : 수취인계좌 입금일

③ CMS 이용기관 승인정보 변경

CMS 이용 중 이용기관 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결제원으로 아래의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구분	신청서종류 및 첨부서류	접수방법
이용기관 사업자 정보변경	- 사업자등록정보 변경신청서 (※대표자, 기관명, 주소 등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변경 불가 (해지 후 신규 신청)	우편
거래 금융기관 및 계좌변경	- 입출금이체 계좌변경신청서 - (법인, 대표자)인감증명서 - CMS 이용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우편
결제원 이용요금 납부계좌변경	- 중계수수료 납부계좌 변경신청서 - 통장사본	우편
출금이체 한도변경	- 직접접수방법 및 한도변경신청서 - 월간한도 변경 시 변경된 금액에 적용되는 직접접수 보증수단 * 월간출금한도는 현재 월간출금한도의 50% 이내, 건당출금한도는 현재 월간출금한도의 10% 이내에서 증액 가능	우편
직접접수 보증수단 변경	- 직접접수방법 및 한도변경신청서 - 변경된 직접접수 보증수단	우편
납부자번호 추가·변경	- CMS 납부자번호체계 추가·변경신청서	우편
담당자 변경	- 담당자 선임(변경)통보서	FAX, 유선 홈페이지
통장기재내역 변경	- 유선 요청(고객센터 1577-5500, 상담원 연결) * 통장기재내역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상호명 사용 가능(8자 이내)	유선

* 신청서 : CMS홈페이지(www.cmsedi.or.kr)-자료실-업무양식

④ CMS 이용승인 해지

[CMS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① CMS 해지신청서 작성, 금융결제원 앞 우편제출

▼

② CMS 이용요금 완납 확인후 3일 이내에 해지 승인

Cash
Management
Service

Ⅳ 기타 서비스

1.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서비스
2. CMS 현금영수증
3. 빌링원플러스

Ⅴ 이용요금

1. 수수료 종류
2. 수수료 체계

KFTC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❶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서비스

1)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서비스란?

CMS 이용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입출금 업무처리를 위하여 계좌의 실명조회 및 고객계좌등록(해지)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서비스 종류

- **실시간 계좌실명조회**

고객 계좌가 정상계좌인 경우 계좌실명(예금주명)을, 비정상계좌인 경우 불능사유를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 **실시간 출금이체신청 등록(해지)**

고객 계좌가 정상계좌인 경우 금융기관 전산에 즉시 출금이체 신청(해지)내역을 등록하고, 비정상계좌이거나 등록(해지)이 불가한 경우 불능사유를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❷ CMS 현금영수증

1) CMS 현금영수증 서비스란?

이용기관의 출금내역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거래로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 유형

- **금융결제원 대행 생성(㉮형)**

이용기관의 CMS 출금요청/출금결과 파일을 토대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금융결제원에서 대행 생성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방식

- **이용기관 직접 생성(㉯형)**

이용기관이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직접 만들어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면, 금융결제원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식

※ CMS 출금거래 외에 타 결제수단으로 수납한 거래내역 추가 가능

❸ 빌링원플러스

1) 빌링원플러스란?

고객원장관리부터 수납/지급 파일 생성 및 송수신, 수납지급내역관리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결제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빌링원플러스 서비스 종류

구분	서비스 내용
고객 원장관리	- 이용기관의 고객정보 등록, 수정, 조회 등
수납/지급내역관리	- 수납/지급내역 관리 - 월별/일별내역 및 고객별 내역 관리
서비스별 파일생성 및 관리	- 고객계좌등록, 출금의뢰, 입금의뢰 파일생성 및 송수신 - 파일 송수신 내역 및 history 관리
기타 서비스	- SMS 통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비스 -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행 등

3) 빌링원플러스 신청방법

CMS 실시통보서에 빌링원플러스 신청정보를 기입하여 홈페이지(www.cmsedi.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송부

※ 별도의 전산테스트 없이 CMS 승인과 동시에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❶ 수수료 종류

• 금융기관 수수료 (이용기관 → 금융기관)

출금/입금요청 내역을 처리해주고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이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금융기관 수수료는 출금(입금)이체 수수료 및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한 수수료가 있으며, 출금(입금) 수수료는 금융기관과 CMS 이용계약 체결시 결정되고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에 대한 수수료는 주거래 금융기관과 상관없이 조회 또는 등록 요청하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합니다.(조회 또는 등록 요청한 금융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

• 중계수수료 (이용기관 → 결제원)

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과 금융기관과 자료전송 및 처리를 중계해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됩니다.

❷ 수수료 체계

1) 출금(입금)이체 이용수수료

구 분			비 용		징수방법
			의뢰건당	이체건당	
금융기관 수수료 (VAT없음)	출금이체	익일출금	20원+α *학교는 면제	120원+α *학교는 정액 60원	이용기관 지정계좌로 자금입금시 차감후 입금
		당일출금	40원+α *학교는 면제	260원+α *학교는 정액 80원	
	입금이체		-	100원+α *학교는 정액 100원	이용기관 지정계좌에서 자금출금시 합산하여 출금
결제원 중계수수료 (VAT별도)			중계건수	중계수수료	이용월 익월 이용기관 계좌에서 3차(15일, 20일, 25일) 자동출금
	월이용료	PC 기관	1,500건 이하	40,000원	
			1,500건 초과	40,000원+전송료	
			* 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 30,000원/월정액		
		HOST 기관	25,000건 이하	200,000원	
			25,000건 초과	200,000원+초과건당 수수료	
프로그램비용			프로그램 업체별 상이		프로그램업체에서 징수

* 금융기관 수수료에서 α는 이용기관과 계약금융기관 간 자율 결정

※ 전송료(초과 건당 적용)

구간(건)	1,501~4,000	4,001~15,000	15,001~40,000	40,001~125,000	125,001 이상
출금이체(익일출금), 입금이체, 출금이체신청	8	7	6	5	2
출금이체(당일출금)	9	8	7	5.5	2.1

* 결제원 이용료는 기본건수 초과 시 구간별 건당요금 적용

2) 실시간 계좌조회/등록(해지) 이용수수료

구 분	비 용		징수방법
금융기관수수료 (VAT없음)	100원~200원 (금융기관별 상이)		이용월 익월 이용기관 계좌에서 3차(15일, 20일, 25일) 자동출금 *금융기관수수료를 결제원이 수납대행
결제원 수수료 (VAT별도)	PC 기관	14~40원/건	
	HOST 기관	30,000원/월+초과건당수수료 * 전송 기본건수 1,000건	

※ 결제원 중계수수료(구간별 적용)

PC기관	구간(건)	1~100	101~1,000	1,001~ 5,000	5,001~ 15,000	15,001 이상
	금액(원)	40	30	20	17	14
Host기관 (초과건당수수료)	구간(건)	1,001~ 5,000	5,001~ 15,000	15,001~ 25,000	25,001 이상	
	금액(원)	20	17	14	10	

3) 빌링원플러스 이용수수료

구 분	비 용		징수방법
결제원 수수료 (VAT별도)	기본요금	15,000원/월, 등록고객 100명 까지	이용월 익월 3차(15일, 20일, 25일) 자동출금
	추가요금	2,000원/월, 등록고객 100명 추가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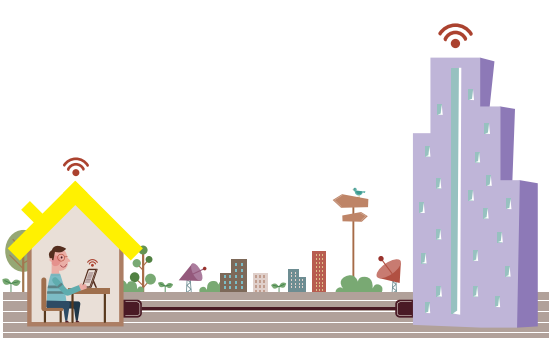

“신뢰받는
금융결제서비스의 중심,
KFTC”

금융결제원

135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9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www.cmsedi.or.kr E-mail | cms@kftc.or.kr
고객센터 | 1577-5500(3)